

붙임3**직무수행능력 평가 기준****□ 직무수행능력(정량) 세부 평가기준**

심사항목	심사방식
학교·직업교육 (20점)	(심사 시 고려사항) · 교과목명 또는 주요내용이 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· 과목수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학교 또는 직업교육 과목수를 합산 · 직무 관련성은 심사위원이 판단 (심사기준) ·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교·직업교육 과목수 1개당 5점 부여(최대 20점)
경력사항 (20점)	(심사 시 고려사항) · 경력사항 업무내용이 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· 경력사항 근무기간을 합산 · 직무 관련성은 심사위원이 판단 (심사기준) ·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력기간 24개월 이상: 20점 부여 ·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력기간 18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: 15점 부여 ·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력기간 12개월 이상 ~ 18개월 미만: 10점 부여 ·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력기간 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: 5점 부여 ·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력기간 6개월 미만: 0점 부여
자격사항* (10점)	(심사기준) 등급별 보유 자격증 개수에 따라 최대 10점 부여 · A등급 자격증 보유 시: 1개당 10점(최대 10점) · B등급 자격증 보유 시: 1개당 6점(최대 10점) · C등급 자격증 보유 시: 1개당 4점(최대 10점) ex) B등급 자격증 2개 보유 시, 10점 ex) B등급, C등급 자격증 각 1개씩 보유 시, 10점 ex) C등급 자격증 2개 보유 시, 8점